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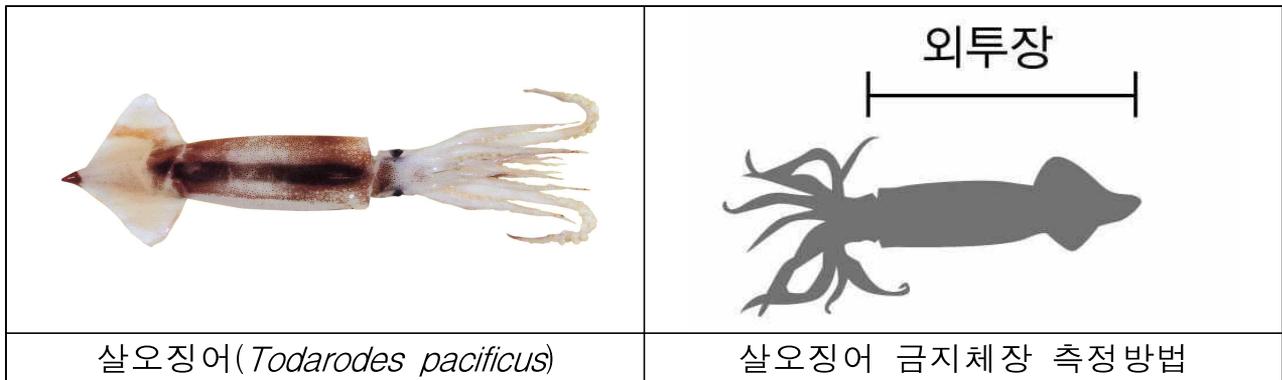
보도일시 (인터넷) 2023. 3. 31.(금) 11:00, (지면) 2023. 4. 1.(토) 조간 배포 2023. 3. 31.(금) 06:00

오징어 풍년이 될 수 있도록 4~5월에는 기다려주세요

- 4. 1.(토)부터 5. 31.(수)까지 살오징어 금어기 운영

4월 1일(토)부터 5월 31일(수)까지 두 달간은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살오징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살오징어, 고등어 등 총 44종의 수산동식물에 대해 금어기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살오징어의 경우, 주로 가을과 겨울에 산란하여 봄철에 성장하는 생태적 특성에 맞추어 4월과 5월을 금어기로 지정해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은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어기를 4월 한 달간으로 정하였다.

한편, 금어기가 아닐 때도 일정 크기가 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아서 안된다. 해양수산부는 ‘총알오징어’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가

마구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외투장* 15cm로 지정하고 이보다 작은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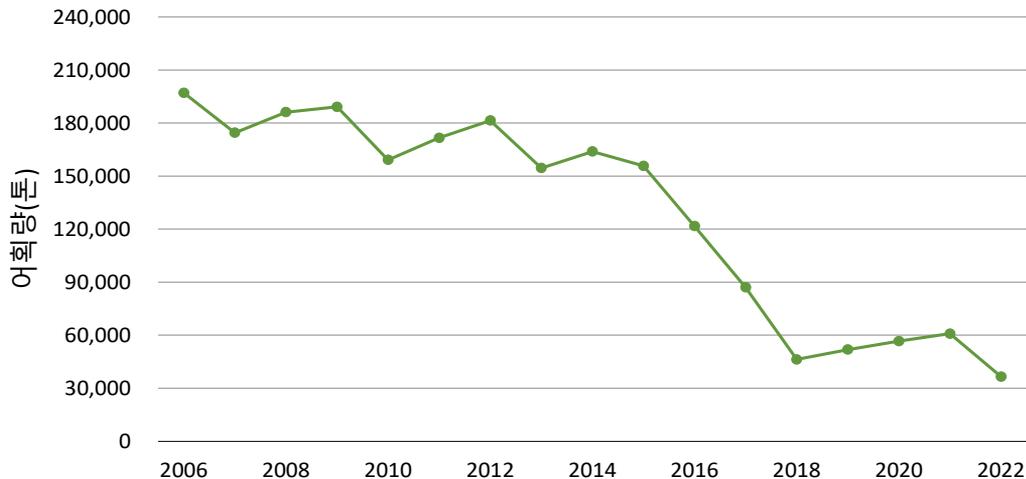
* 마치 외투를 걸친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 모양을 의미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일반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살오징어 외에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살오징어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라며, “살오징어를 비롯한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연도별 살오징어 어획동향(2005~2022년) >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30)
		담당자	사무관 류충현 (044-200-5540)

참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1·2)에 따른 금어기·금지체장



시행 : 2021.1.1

월	1월		3월	4월			5월					
품종	명태	대구	가리비	삼오징어			탈게	고등어	코끼리조개	감성돔	삼치	참농어
포획금지기간	1.1~12.31	1.16~2.15	3.1~6.30	4.1~5.31(단,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정지망 4.1~4.30)			4.1~5.31(강원)	4.1~6.30 중 1개월	4.1~7.31(강원, 경북)	5.1~5.31(신설)	5.1~5.31(신설)	5.16~6.30(신설) (시·도지사는 5.1~9.15중 46일 이상을 설정가능)
포획금지체장		35cm		15cm			7cm(강원)	21cm		25cm		

월	6월											
품종	대하	전어	대합	감태	곰피	말쥐치	주꾸미	낙지	참홍어	꽃게	소라	펄담새우
포획금지기간	5.1~6.30	5.1~7.15(단, 강원, 경북 제외)	5.1~7.31	5.1~7.31(제주 연중)	5.1~7.31	5.1~7.31	5.11~8.31	6.1~6.30 (지자체 별도 고시 가능)	6.1~7.15	6.21~8.20(단, 연평 등 서해5도서 7.1~8.31)	6.1~8.31(전남, 제주), 7.1~9.30(제주 추자면) 6.1~9.30(울릉)	6.1~8.31
포획금지체장						18cm			42cm	6.4cm	5cm(제주 7cm)	10cm

월	7월											
품종	새조개	대게	갈치	참조기	해삼	백합	개서대	담새우	오분자기	키조개	붉은대게	육돔
포획금지기간	6.16~9.30 (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6.1~9.30)	6.1~11.30	7.1~7.31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제외)	7.1~7.31(단, 유자망 4.22~8.10)	7.1~7.31	7.1~8.20	7.1~8.31	7.1~8.31	7.1~8.31	7.1~8.31	7.10~8.25 (단, 강원연안지방 6.1~7.10)	7.21~8.20
포획금지체장		9cm	18cm(황문장)	15cm		5cm	26cm	5cm	4cm(제주)	18cm(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품종	듬부기	전복류	넙치	도박류	연어	룻	취노래미	개다시마	우뚝가시리	문치(가시미)
포획금지기간	8.1~9.30	9.1~10.31(제주 10.1~12.31)	9.1~11.30(제주) (단, 제주도 고시로 5.1~11.30 중 3개월 이상 지정 가능)	10.1~익년 4.30	10.1~11.30	10.1~익년 1.31	11.1~12.31	11.1~익년 1.31	11.1~익년 4.30	12.1~익년 1.31
포획금지체장		7cm(제주 10cm)					20cm			20cm(단, 3년간 17cm)

규제	금지체장																			
품종	기름가자미	기수재첩	갯장어	납치	농어	도루묵	대문어	돌돔	미거지	민어	방어	볼락	붕장어	용가자미	조피볼락	참가자미	참돔	청어	황돔	황복
포획금지체장	20cm (단, 3년간 17cm)	1.5cm	40cm	35cm	30cm	11cm	600g	24cm	40cm	33cm	30cm	15cm	35cm	20cm (단, 3년간 17cm)	23cm	20cm(단, 3년간 17cm)	24cm	20cm	15cm	20cm

* 빨간색 : 2021.1.1부터 변경되는 어종



품종	포획금지기준	품종	포획금지기준
꽃게	복부 외포란 암컷	대게	암컷
민꽃게		붉은대게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 제3항)

-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용가자미, 기름가자미의 경우 '21.11~'23.12.31까지는 17cm 이하 적용, '24.1.1부터는 20cm 이하 적용
- 별도 금지 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참조
- 개정 어종의 경우, '21.1.1부터 시행(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20.9.22 공포 및 11.10 공포)